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 및 유희공간 운영 규정 변경(안)

2020 . 06 . 12 .

| | | | | | | | |
|------|-------------|-------|------------|---------------------|---------|--|--|
| 문서번호 | 시설운영팀-1529 | 선임 | 시설운영 팀장 | 서울새활 용플라자 센터장 | 대표이사 | | |
| 결재일자 | 2020.06.15. | 06/12 | 06/12 | 06/15 | 전결06/15 | | |
| 공개여부 | 부분공개(7) | 김재호 | 이호섭 | 윤대영 | 최경란 | | |
| 방침번호 | | 협 조 | | | | | |

| | | | |
|---------------|--|---------------------|--------------------------|
| 추진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 서울새활용플라자 업무 현안사항 안내(서울시 자원순환과) | | |
| 대 내 외 협력현황 | 부서(단체)명 | 협약내용 | 협약결과 |
| | 서울시 자원순환과 | 대관료 산정 및 유희공간 운영 | 대관료 및 유희공간 운영규정 협의 완료 |
| | | | |
| 사 업 비 | - 없음- | |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운영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검 토 항 목 | 검토여부 '✓' 표시 |
|----------------------|---|
|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법 령 및 기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
| | 기 타 :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
| |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시 자원순환과) 무 <input type="checkbox"/> |
| | 관 련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 및 유희공간 사용 승인 계획(안)

서울디자인재단이 관리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의 공간에 사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유희공간운영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효율적인 대관 및 유희공간 운영을 목적으로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2019년)
- 추진 사유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 (이용료 등의 징수처리)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 운영 사업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유희공간 활성화 및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규정개정 주요내용

1) 목적 및 범위

- 목적
 -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시설 대관운영 사용료 징수 및 유희공간에 사용에 있어 필요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범위
 - **대관공간** -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자체 행사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정한 공간 (1층 미디어룸, 4층, 5층 교육실)
 - **유희공간** - 서울새활용플라자 미 입주 공실 및 장기사용시 심의가 필요한 공간 (5층 회의실, 3층·4층 공실, 지하1층 휴게실, 외부 유희공간 컨테이너 등)
- ※ 향후 관리공간 확대 및 운영 필요성에 따라 공간은 조정 될수 있음

| 구 분 | 5층 회의실 | 지하1층 휴게실 | 외부 유희공간 컨테이너 |
|----------|---|--|---|
| 유희 공간 |  |  |  |

2) 대관료 및 감면 개정내역

■ 대관료 산정

- 2020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개별공시지가 270% 상승으로 대관료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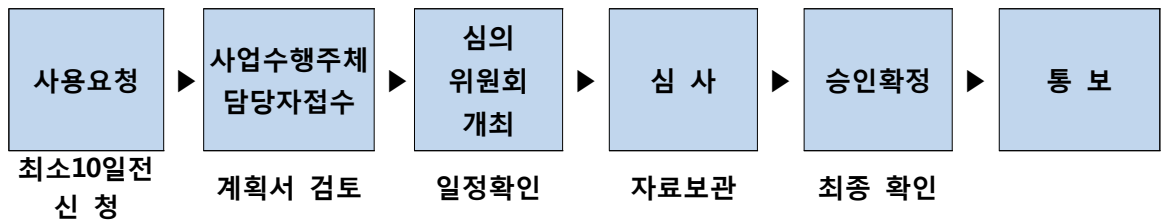
■ 대관료 감면

- 전액 감면
 -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행사 공간사용 심의위원회에서 행사 계획서 및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
 - 유휴공간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및 구성 추가
- 반액 감면 : 기존과 동일

3) 유휴공간 사용 심의위원회 규정신설

■ 심의위원회 승인 절차

□ 승인 프로세스 (유휴공간)



- 유휴공간에 장기간 사용이 필요할 시 유휴공간 사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허가를 심의한다. <제5조 유휴공간 사용 심의위원회 규정 내용추가>

■ 유휴공간 사용

- 재단의 동의 없이 공간이용 승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 비품, 설비 관리 및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공간을 이용함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시설 대관료(제7조 제2항)

| 시 설 명 | 면적 | 수용 인원 | 시설장비 | 기준 시간 | 시간당 사용요금 |
|----------------|--------------------|-------------|------------------|---------------|--------------------------------|
| 미디어룸 (1층) | 81㎡ | 20 | 빔프로젝트, 책상 | 기본 3시간 | 10,000원 (기존 8,000원) |
| 교육실 (4층) | 142㎡ | 30~40 | 빔프로젝트, 책상 | 기본 3시간 | 15,000원 (기존 10,000원) |
| 공용스튜디오 (3층) | 8㎡~ 21㎡ | 6~10 | 스마트TV, 책상 | 기본 1시간 | 2,000원 |
| 교육실 (5층) | 205㎡ | 50 | 빔프로젝트, 책상 | 기본 3시간 | 20,000원 (기존 15,000원) |

[비 고]

- 공용스튜디오는 입주기업 지원공간으로 대관시설에서 제외.(삭제)<개정 2020.06.12.>

※ 2020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270% 상승으로 반영 **대관료 인상**
<개정 2020.06.12.>

-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기업, 단체 등)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50% 감면할 수 있다.

유휴공간

| | | | | | |
|------------|-----------|--------|--------|-------------|------------|
| 유 휴 공간명 | 공용회의실(5층) | 공실(4층) | 공실(3층) | 지하1층 휴게실 | 외부 컨테이너 |
|------------|-----------|--------|--------|-------------|------------|

3.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서울시 자원순환과 협의 : ~ 2020.06.12.
- 대표이사 방침 승인 진행 : ~ 2020.06.15
- 수정규정 시행 및 운영 : ~ 2020.07.01.

- 붙임. 1.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위수탁협약서(2020년 공증) 1부.
2.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 및 유휴공간 운영규정(안) 1부
3.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료 계산식(2020년 6월)1부.
4. 서울새활용플라자 업무 현안사항 안내(서울시 공문) 1부. 끝.

【별지1】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 및 유희공간 운영 규정

제정 2017.10.20.

개정 2020.0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시설 및 장비의 대관운영 및 사용료 등을 징수와 유희공간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12.>

제2조(용어)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대관시설”은 서울새활용플라자내의 대관 가능한 공간 및 그에 따른 부대 장비, 시설을 말한다.
- ② “관리주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새활용플라자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③ “사업수행주체”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및 입주자의 선정·관리 및 입주자와의 협업·협력 및 재활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디자인재단 사업담당자를 말한다.<신설 2020.06.12.>
- ④ “대관료”는 대관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 대부료와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정한 사용료를 말한다.
- ⑤ “대관자”는 대관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⑥ “유희공간”은 입주기업 공방, 소재은행, 꿈꾸는공장, 디자인하우스, 새활용배움터, 창작실 등 공간에 용도가 명확히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5층 공용회의실, 3층 공실, 4층 공실, 지하1층 휴게실, 외부 컨테이너 등에 유희공간을 말한다.<신설 2020.06.12.>
- ⑦ “유희공간 사용 심의위원회”은 5층 공용회의실, 3층 공실, 4층 공실, 지하1층 휴게실, 외부 컨테이너 등 유희공간 사용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심의 한다.<신설 2020.06.12.>

제3조(대관의 범위)

- ① 대관장소는 1층 미디어룸, 4층 교육실, 5층 교육실 등 대관을 위한 기본 장비(AV, 오디오 시스템)가 설치 및 집기와 비품이 구비되고, 독립된 개별에 행사가 가능한 장소로 지정한

다.<신설 2020.06.12.>

② 대관시설의 경우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자체 행사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시설 및 대관기간을 정하고 대관할 수 있다. 다만, 정기 대관 및 장기간(연속사용 10일 이상) 대관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06.12.>

③ 서울새활용플라자의 대관시설 및 사용시간 등 대관에 관한 사항은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대관신청의 범위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대관 공간 특성상 새활용 관련을 교육, 회의, 워크숍 등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주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는 대관신청이 가능하다.

③ 유휴공간을 10일이상 사용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휴공간 사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여부를 확정한다.<신설 2020.06.12.>

④ 유휴공간에 사용일은 특이사항이 발생 시를 제외하고 최대 3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0.06.12.>

⑤ 특이사항 발생 시 서울시 및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연장한다.<신설 2020.06.12.>

제5조(유휴공간 사용 심의위원회)<신설 2020.06.12.>

① 사업수행주체는 제4조 제3호에 유휴공간 사용 승인 시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간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새활용 및 재활용 전문가, 기업, 집단과 관리주체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휴공간 사용 승인여부를 심의한다.

2. 사업수행주체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록·유지·보관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총 5인내외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주체 2명(팀장급 이상), 외부인사 3명(서울시 공무원, 새·재활용 전문가 등)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유휴공간 사용 승인기준은 관리주체가 운영실태 및 차기연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한다.

④ 긴급한 유휴공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3인의 위원 구성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 ① 대관시설의 평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 ② 야간 및 공휴일(토요일 포함) 사용시간은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 최소 대관 사용 기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는 기준 시간 사용으로 간주한다.
- ④ 사용시간의 연장, 변경 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대관 시간에는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한다.<신설 2020.06.12.>

제7조(대관료)

- ① 관리주체는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관시설의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대관시설별 대관료는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시설 대관료(별표)에 따른다.

제8조(대관료 및 유휴공간 사용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관료 및 유휴공간 사용 면제 또는 감면 할수 있다.

1. 대관료 및 유휴공간 사용 전액 감면

- 가. 서울특별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서울시 담당부서 대관협조 공문)
- 나. 관리주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담당부서 대관협조 공문)
- 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행사로 위원회에서 행사 계획서 및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신설 2020.06.12.>

2. 대관료 50% 감면

- 가. 서울특별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서울시 담당부서 대관협조 공문)
- 나. 관리주체에서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담당부서 대관협조 공문)
- 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 주체 행사의 경우(입주자 대관 주최 확인시)

제9조(대관신청)

- ① 대관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신청자"라 함)는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관신청자는 대관시설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시설 사용 신청·승인서(별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12.>
- ④ 대관신청자의 대관신청횟수는 월 4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연속된 일자(5일 이하)로 진행되는 대관신청의 경우는 1회로 간주한다.<개정 2020.06.12.>
- ⑤ 대관신청자는 대관신청 이후부터 승인통보 전까지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승인 통보 등)

- ① 대관시설의 사용승인은 선착순 접수에 따라 대관심사를 진행·승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관시설 사용승인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관리주체에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방법은 유선, 문서,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조건 및 대관자 의무)

- ① 대관자는 승인받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시설 사용 신청·승인서를 다시 제출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여 대관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 ② 대관자는 대관시설 사용에 있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③ 대관자는 대관시설 이용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관시설 및 대관 참여자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④ 대관자는 관리주체의 사전 협의하지 않는 어떠한 시설 및 설치물 등을 반입·설치 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가 미승인된 시설 및 설치물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대관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에 관리주체는 대관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 및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승인 취소 등)

- ① 대관자가 대관료를 7일 이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취소할 수 있다.
- ② 대관자가 대관시설의 사용개시일 이전에 대관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관자에게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관시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 반환하지 않음
 2. 대관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1일 이전 취소시 50%를 반환
 3. 대관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이전 취소시 70%를 반환

4. 대관시설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 취소시 전액 반환

제13조(대관시설 출입) 대관자는 관리주체가 대관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설비 관리 및 원상복구)

-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행사 등에 필요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대관시설의 이용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사용한 대관시설의 시설과 집기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대관시설 원상복구 작업시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적용규정) 본 규정은 관리주체와 대관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리주체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규정 미숙지 및 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의 미숙지 및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1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06.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시설 대관료(제7조 제2항)

| 시 설 명 | 면적 | 수용 인원 | 시설장비 | 기준 시간 | 시간당 사용요금 |
|------------------------|--------------------|-------------|------------------|---------------|--------------------------------|
| 미디어룸 (1층) | 81㎡ | 20 | 빔프로젝트, 책상 | 기본 3시간 | 10,000원 (기존 8,000원) |
| 교육실 (4층) | 142㎡ | 30~40 | 빔프로젝트, 책상 | 기본 3시간 | 15,000원 (기존 10,000원) |
| 공용스튜디오 (3층) | 8㎡~ 21㎡ | 6~10 | 스마트TV, 책상 | 카본 1시간 | 2,000원 |
| 교육실 (5층) | 205㎡ | 50 | 빔프로젝트, 책상 | 기본 3시간 | 20,000원 (기존 15,000원) |

[비고]

- 공용스튜디오 3층은 입주기업 지원공간으로 대관시설에서 제외함.(삭제)<개정 2020.06.12.>
- ※ 2020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개별공시지가 270% 상승으로 대관료 인상 <개정 2020.06.12.>
-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자(기업, 단체 등)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50% 감면할 수 있다.

유희공간

| 유 휴 공간명 | 공용회의실(5층) | 공실(4층) | 공실(3층) | 지하1층 휴게실 | 외부 컨테이너 |
|---------|-----------|--------|--------|----------|---------|
|---------|-----------|--------|--------|----------|---------|

【별지】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시설 사용 신청·승인서

| | | | |
|-----------------|--|---------|----------|
| 1. 건 명 | | | |
| 2. 신청인 (주최자) | 상 호 : | | |
| | 사업자번호 : | | |
| | 대 표 자 : | | |
| | 담 당 자 : | TEL : | Mobile : |
| 3. 사용기간 | 사용일자 : 2020 년 월 일 ~ 2020 년 월 일(일간) 사용시간 : | | |
| 4. 장소(V표시) | <input type="checkbox"/> 1층 미디어룸 <input type="checkbox"/> 4층 교육실 <input type="checkbox"/> 5층 교육실 <input type="checkbox"/> 3층 공용스튜디오(삭제)<개정 2020.06.12.> | | |
| 5. 참석인원 | 명 | | |
| 6. 사용장비 | <input type="checkbox"/> 빔 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무선마이크 <input type="checkbox"/> 유선마이크 | | |
| 7. 기타요청사항 | 8. 대관료 | (VAT포함) | |

기본약정사항

1. 대관시설 사용 신청·승인서 후 신청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정해진 해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용기간 개시 전일 : 대관료 50%, 사용기간 개시 3일전: 대관료 30%)
2. 비품·물품은 기존배치 상태로 사용하되, 사전 승인시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각종 부착물은 운영규정 등이 정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4. 대관시설 운영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관리주체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대관시설의 파손, 훼손, 변형 및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원래와 같이 동등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6. 대관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기타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대관료는 대관일 7일전까지 관리주체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다.<개정 2020.06.12.>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관시설 운영규정 등의 이행을 확약하며 대관시설 사용을 신청 합니다.

20 . . .

상 호 :

대표자 : (인)

담당자 (접수자)

승인 심사 문서번호

부서명 -

※ 본 승인서는 임대차계약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